

부산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3213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동진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14,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20710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2. 10. 'B는 원고에게 18,559,248원 및 그 중 5,535,794원에 대하여 201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2. 17. B에게 송달되어 2011. 3. 4. 확정되었다.

나. B의 어머니인 C가 2019. 11. 24.경 사망하여 피고와 B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인 2019. 11. 5.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망인 사망 후인 2019. 12. 16.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 11. 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9.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4.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500만 원 정도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순위번호 1번)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9. 12. 5.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B는 망인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다만 다액의 증여세를 내지 못하고 있던 중 망인이 사망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실체법상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말소 전의 기간 동안에도 그 권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같은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5. 피고 명의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12. 16.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9. 11. 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망인이 2019. 11. 24.경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말소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등기 상의 피고의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여 위 말소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이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증여등기 후 증여세 문제로 법무사사무소 직원과 상담한 결과 2019. 11.경 세금 절약을 위해 증여를 합의해제하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진행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11. 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위 증여등기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거나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9. 12. 16.자 말소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의 소유가 아닌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B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1. 10. 15.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8,559,248원 및 그 중 5,535,794원에 대하여 201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2020. 6. 18. 기준으로 31,549,404원)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9,5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순위번호 1번)의 채권최고액이 3,6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최소 1,475만 원[$(9,500\text{만 원} - 3,600\text{만 원}) \times 1/4$]이므로, 둘 중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47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 1,4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아파트 H동

[도로명주소]부산 영도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및 집회실

1층 내지 5층 각 311.08㎡

지하 154.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영도구 F 대 585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J호 철근콘크리트조 71.4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85100분의 5213. 끝.

